

『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주민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택지개발과 아파트 신축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과대·과소한 통·리·반을 분리 또는 통폐합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.

3. 주요내용

- 5개통 증설 (안 별표9, 별표21, 별표24)
 - 통·리 : 620개 통리(통 448, 리 172) ⇒ **625개 통리(통 453, 리 172)**
 - 송정동 (증 1개통) : 태왕아너스 1·2단지 입주로 과밀통 분리
(22통 8~10반 → 27통 1~3반)
 - 공단2동 (증 1개통, 감 1개통) : 파라디아아파트 입주로 과밀통 분리
(4~5통 → 4~6통), 과소통 통합 (12통 → 13통에 통합)
 - 임오동 (증 4개통) : 태왕아너스파크 신축 (23통), 삼도뷰엔빌 신축 (24~26통)
- 45개반 증설, 5개반 폐지 (안 별표4, 별표9, 별표21, 별표23, 별표24)
 - 반 : 4,438개반 ⇒ **4,478개반 (40개반 증)**
 - 옥성면(증1) : 과대지역으로 반분리 (덕춘1리 1~3반 → 1~4반)
 - 송정동(감1) : 과소반 통합 (20통 7반 → 26통 6반에 통합)

- 공단2동(감4) : 과소반 통합 (12통 1~4반 → 13통에 통합)
- 상모사곡동(증1) : 대풍참하이트 신축 (13통 1~5반 → 1~6반)
- 임오동(증43) : 과밀반 분리 (8통 1~8반 → 1~10반 9통 1~6반 → 1~7반
18통 1반 → 1반 15반), 태왕아너스파크 신축 (23통 9개반)
삼도뷰엔빌아파트 신축 (24통 11개반 25통 12개반 26통 7개반)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 2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주민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택지개발과 아파트 신축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과대·과소한 통·리·반을 분리 또는 통폐합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,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통리는 620개 통리에서 송정동 1개통 증설, 공단2동 1개통 증설과 1개통 폐지, 임오동 4개통 증설로 625개 통리로 조정하였고,
- 반은 4,438개 반에서 45개 반 증설, 5개 반 폐지로 총 40개 반이 증가된 4,478개 반으로 조정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최근 택지개발과 아파트 신축 등으로 지역여건이 변화된 지역의 통반을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,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됨.

【 관 계 법 령 】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4조의2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그 결과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,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(이하 "행정면"이라 한다)을 따로 둘 수 있다.

④ 동·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·리를 2개 이상의 동·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·리를 하나의 동·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·리(이하 "행정동·리"라 한다)를 따로 둘 수 있다.

⑤ 행정동·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